

●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26호**

개선권고 재결

2026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07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개선권고 재결공고[중앙해심 제2026-002호(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)]

사 건 명 : 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

피요청자 : 사**** ****(** ***)

부**** ** ***** , *

귀 법인에 등록되어 있던 스텔라데이지가 2017. 3. 31. 13:24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동방 약 1,55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선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침몰사건은 스텔라데이지가 개조 이후 취약해진 횡강도, 장기간 누적된 피로 손상 및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철광석을 만재하고 항해하던 중, 너울성 파랑에 의한 비대칭 횡압력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2번 및 3번 좌현 선박평형수탱크 선저만곡부의 외판이 찢겨나가 대량 해수 유입이 발생한 후 인접 탱크까지 손상 및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따라서 이러한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의 선급검사 및 인증심사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첫째, 현상검사 시 미승인 구조물 설치 또는 승인받지 않은 화물적재 및 고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상태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소속 검사원의 교육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.

둘째, 특히 선령 15년을 초과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시 과도한 부식, 심각한 변형 등을 식별하기 충분할 정도로 검사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관련 선급규칙을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.

셋째, 사업장·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숙련된 심사원을 배치하고, 선박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서 등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사업장·선박의 내부심사 및 시정·환류 등의 절차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장·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원 교육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.